

# 일본 노인요양시설의 연구경향에서 본 거주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Living Environment Examined form Research Trend of Elderly Care Facility of Japan

|                     |                      |                      |
|---------------------|----------------------|----------------------|
| 김 선 태 <sup>*</sup>  | 김대년 <sup>**</sup>    | 윤영선 <sup>***</sup>   |
| Kim, Sun-Tae        | Kim, Dae-Nyun        | Yoon, Young-Sun      |
| 문재호 <sup>****</sup> | 변혜령 <sup>*****</sup> | 정미렵 <sup>*****</sup> |
| Moon, Jae-Ho        | Byun, Hea-Ryung      | Chung, Mi-Ryum       |

### Abstract

By considering research trend how flow of elderly welfare policy of Japan, which experienced an aging society already, has changed and developed and characteristic of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has its purpose to offer basic data to be helpful for finding out direction of Korean future elderly care facility. Way of study worked with only Special Nursing Home and Group Home where elderly with dementia mainly lived among researches of elderly welfare facility published in Journal of Architecture Planning Engineering of Japan from Jan, 1990 to Sep, 2006. And the number of example of analysis was total 69. The result was classified by year, facilities, and keyword and this study has its focus on discussion of space planning element requested as living environment.

Keywords : Elderly Care Facility, Research Trend, Living Environment, Special Nursing Home, Group Home, Japan  
주요어 : 노인요양시설, 연구경향, 거주환경, 특별양호노인홈, 치매성고령자그룹홈, 일본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생활환경의 개선, 식생활의 개선, 의료제도의 보급 및 의료기술의 진보 등에 의해 사망률의 저하와 함께 평균 수평이 크게 늘었으며, 급격한 저출산률로 인해 고령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예측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5년). 우리나라의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115년), 미국(68년), 일본(26년)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구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노인의 증가로 치매노인과 같이 요양서비스

(long-term care)에 대한 요구를 가진 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급증은 보호기간의 장기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의 증가 등으로 가족 보호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치료환경의 중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면서 노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노인요양시설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과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한 노인수발보험제를 2008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시책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노인관련 계획연구도 제도에 뒤따라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제도화·보편화될 수 있는 선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미리 노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발전해 왔는지 노인복지정책과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의 최근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노인요양시설 계획시 계획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 노인복지사상 획기적인 제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공적개호보험(이하 개호보험) 제도 실시 전후의 연구경향과 시설계획에 어떠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1990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협력연구원  
\*\*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극동정보대학 인테리어디자인학과 부교수  
\*\*\*\* 세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전문연구원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본 논문은 한국과학재단의 2006년도 특정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R01-2006-000-10656-0).

지의 연구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일본 노인거주시설 관련 연구는 주로 일본건축학회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 잡지로 선정하였다. 총 추출된 논문편수는 총 108개이며, 이들 연구를 시대별로 연구목적, 조사대상, 연구결과 등으로 나누어 정리, 분석하였다.

표1. 조사 Sheet

| 발표년도 | 논문제목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조사대상 | 연구결과 | 키워드 |
|------|------|------|------|------|------|-----|
|      |      |      |      |      |      |     |

특히,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거주 환경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조사대상시설을 치매노인을 주로 입소하는 대규모 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과 소규모 시설인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이하, 그룹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선정된 논문편수는 총 69편이며, 시대별, 시설별, 키워드별로 나누어 거주환경으로서 요구되는 공간계획요소를 논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II. 이론적 고찰

### 1. 일본 노인복지정책과 노인거주시설의 변천

1950년의 생활보호법에 의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양로시설이 탄생한 이후,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양로시설은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으로

분류되었고,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노인홈을 포함시켜 4개의 시설로 정비되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입소에서 벗어나, 신체적 상황이나 가족상황, 주택상황을 이유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거주시설은 세분화의 계속과 더불어 새로운 타입의 시설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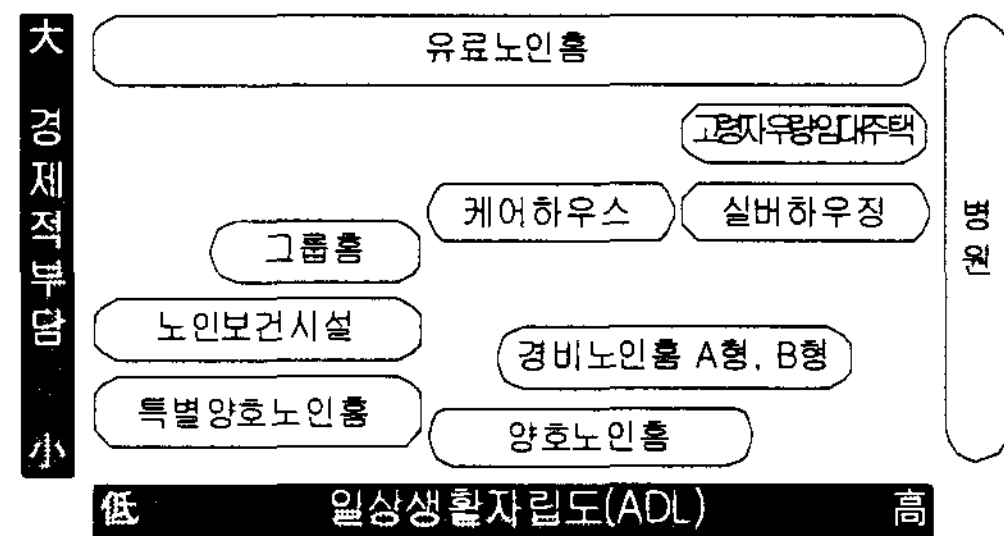


그림1. 일본 노인거주시설의 분류

1973년 노인의료비 무료화는 사회적 입원의 증가와 열악한 요양환경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1988년 노인보건시설의 창설과 1992년 요양형병상군이 제도화되었다. 경비노인홈은 급식의 유무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었고 1989년 골드플랜으로 케어하우스가 등장하였다. 특별양호노인홈은 4인실과 대식당을 가진 평면구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유니트 케어(unit-care)를 도입한 소규모 생활

표2. 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시설의 변천

| 1970년대 이전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
| 50 생활보호법<br>51 공영주택법<br>63 노인복지법      | 70 고령화율 7%초과<br>73 노인의료비 무료화 | 84 세계1위의 장수국<br>82 노인보건법<br>89 골드플랜        | 94 고령화율 14% 초과<br>90 복지법 8법 개정 94<br>신골드플랜<br>94 하트빌딩법 99 골드플랜 21<br>99 신체구속금지 명시 | 00 공적개호보험제도 시행<br>01교통배리어프리법<br>01 고령자거주안정보호법<br>03 개호보수 개정 05 개호보험<br>개정 |
|                                       | 노인병원 증가                      |  | 91 노인성치매질환요양병동<br>92 요양형병상군   | 00 개호요양형의료시설<br>06 개호요양형의료시설 폐지<br>(2012년)                                |
|                                       |                              | 88 노인보건시설                                  | 92 치매전문동 가산   | 02 그룹케어유니트형<br>04 치매전문동 가산 폐지   |
| 63 특별양호노인홈                            | 74 거주실 정원 4인<br>이하           | 80 도시형 특양<br>87 소규모 특양<br>89 개실 가산 20%     | 90 전실개실형특양 등장<br>91 지역교류스페이스 가산<br>95 개실 가산 30%                                   | 00 그룹케어유니트형<br>03 소규모생활단위형 특양<br>(개실+유니트)                                 |
| 63 양호노인홈<br>63 경비노인홈                  | 73 개실화 지도<br>71 A형, B형       | 84 소규모특양병설 가능<br>89 케어하우스                  |   | 00 케어하우스 특정시설 인정<br>02 PFI형 케어하우스<br>06 지역밀착형(정원 30인 이하)                  |
| 63 유료노인홈                              |                              |  | 91 실버마크 제도  | 00 특정시설 인정<br>06 지역밀착형(정원 30인 이하)   |
| 64 노인세대 우선<br>입소                      |                              | 89 고령자생활복지센터<br>86 실버하우스<br>87 실버피어(동경)    | 90 시니어 주택 95 그룹하우스<br>97 치매성고령자그룹홈<br>97 그룹리빙모델사업<br>98 생활지원하우스<br>98 고령자우량임대주택   | 02 고령자우량임대주택<br>특정시설 인정<br>02 그룹홈 외부평가의무화                                 |
| 62 홈헬퍼파견사업<br>63 노인복지센터<br>65 노인휴식의 집 | 78 단기보호사업                    | 81 방문서비스사업<br>83 주간서비스사업<br>82 홈헬퍼(소득제한철폐) | 90 재택개호지원센터<br>90 단독 단기보호시설<br>91 단독 주간서비스 시설                                     | 06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

표3. 일본 노인거주시설의 개요

| 시설분류      | 시설 개요  | 면적 / 정원  | 창설년도   |                        |
|-----------|--|--|--|------------------------|
| 시설계 서비스   |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 65세 이상(65세 미만인 자가 초로기 치매인 경우도 포함)으로 신체, 정신상 뚜렷한 장애로 인해 상시 개호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며, 집에서 적절한 개호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입소시켜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종래형 10.65㎡/인, 4인 이하<br>소규모 생활단위형 13.2㎡/인, 원칙 1인실 | 1988년                  |
|           | 개호노인보건시설 (노인보건시설)  | 질병치료 후 안정기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자를 대상으로, 간호나 의료적 관리 하에 개호, 기능훈련, 의료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여 서비스 제공               | 8.0㎡/인, 4인 이하                                    | 1988년                  |
|           | 개호요양형의료시설 (요양병상)   | 주로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켜 간호와 개호를 제공  | 6.4㎡/bed, 4인 이하                                  | 1992년 (2000년 개호보험 적용)  |
| 재택계 서비스   | 치매성고령자그룹홈  | 치매성 노인이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입욕, 배설, 식사 등 생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이 가진 능력에 맞는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                                     | 7.43㎡/인, 원칙인실(2인실 가능)                            | 1997년                  |
|           | 양호노인홈  | 65세 이상으로 신체, 정신 또는 환경 및 경제적 이유로 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입소시켜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3.3㎡/인, 2인 이하 (1973년 1인실 지도)                     | 1963년                  |
|           | 유료노인홈  | 다양한 요구를 가진 노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소, 생활하는 시설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설치, 운영되며, 식사 제공이나 일상생활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일반 거주실 1인실<br>개호 거주실 13㎡/인, 1인실                  | -                      |
|           | 케어하우스  | 60세 이상으로 신체기능 저하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해 독립해서 생활하기에 불안하며, 가족의 보조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1인실 21.6㎡/인<br>부부실 31.9㎡                         | 1989년                  |
|           | 경비노인홈A, B형   | 60세 이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 및 가정적 사정 등으로 인해 가족과 동거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급식서비스의 유무에 따라 A형과 B형)                          | A형 16.5㎡/인, 1인실<br>B형 24.8㎡/인, 1인실               | 1963년 (1971년 A, B형 분리) |
|           | 생활지원하우스  | 60세 이상으로 고령 등으로 인해 독립해서 생활하기에 불안함을 느끼는 자가 대상이며, 상담 및 긴급시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 18.0㎡/인, 원칙인실                                    | 1989년                  |
|           | 실버하우징  |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고령자의 생활특성을 배려한 설비나 사양을 갖추고 생활보조원을 배치하여 일상적인 생활상담, 안부확인, 일시적인 가사지원, 긴급시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 19.0㎡/주호   | 1986년                  |
| 고령자우량임대주택 |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신체기능에 대응한 건축사양, 설비, 긴급시 대응의 서비스를 제공 | 25.0㎡/주호 (공용이용형의 경우 18㎡/주호)  | 1990년  |                        |

단위형 특별양호노인홈이 2003년 제도화되었다. 특히 1997년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이 등장하여, 대규모 시설에서의 케어, 생활, 공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소규모화, 지역화, 재택화 등 노인주거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실시된 개호보험제도는 조치에서 계약으로의 이행, 선택과 권리의 보장,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일체적인 제공, 개호서비스의 새로운 자원 확보 등 일본 노인복지사상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개호보험은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시설서비스에는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요양형의료시설(요양병상)이 포함된다. 재택서비스에는 방문통소서비스, 단기입소서비스, 거택개호지원 외에,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개호(그룹홈), 특정시설입소자 생활개호(케어하우스, 유료노인홈 등), 복지용구대여, 주택수리비 지급 등이 포함된다.

2. 일본 노인거주시설의 개요

노인이 자택 대신에 입소하는 주된 거주시설을 분류하며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1) 시설서비스(개호보험 3시설)

개호보험의 시설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병상 등을 말한다. 다른 노인거주

시설에 비해 개호의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입소하며, 직원 배치도 윤택하며 정비된 시설수도 많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식사, 입욕, 배설 등 많은 생활면에서 신체적인 개호를 필요로 한다. 대개 정원 50~100명 정도의 대규모 시설이 많으며, 최근 10명 정도로 구성된 생활단위(유닛)가 도입되고 있다.

2) 재택서비스

양호노인홈, 유료노인홈, 케어하우스, 경비노인홈(A, B형), 실버하우징, 고령자우량임대주택 등과 10~20인 정도의 소규모 거주형태인 그룹홈, 생활지원하우스 등이 해당된다. 입소 당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는 적지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개호의 필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공간의 독립성이 높고, 거실면적은 시설서비스보다 넓다.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A, B형)의 신축은 억제되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홈 등 소규모 거주형태는 보통의 거주생활과 비슷하여 친화성이 있으며 이용자의 공동성과 협동성을 키우는데 유리하지만, 케어의 질 확보나 운영비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 III. 분석 결과

#### 1. 노인요양시설의 연구 경향

##### 1) 시설별 연구 경향

일본의 노인거주시설 관련 논문 수를 중복 산정하여 살펴보면, 1995년 이전까지는 노인시설 연구수가 적었지만, 개호보험시행 전후에 걸쳐 논문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시설서비스는 특별양호노인홈(n=50)을 중심으로, 재택서비스는 그룹홈(n=20)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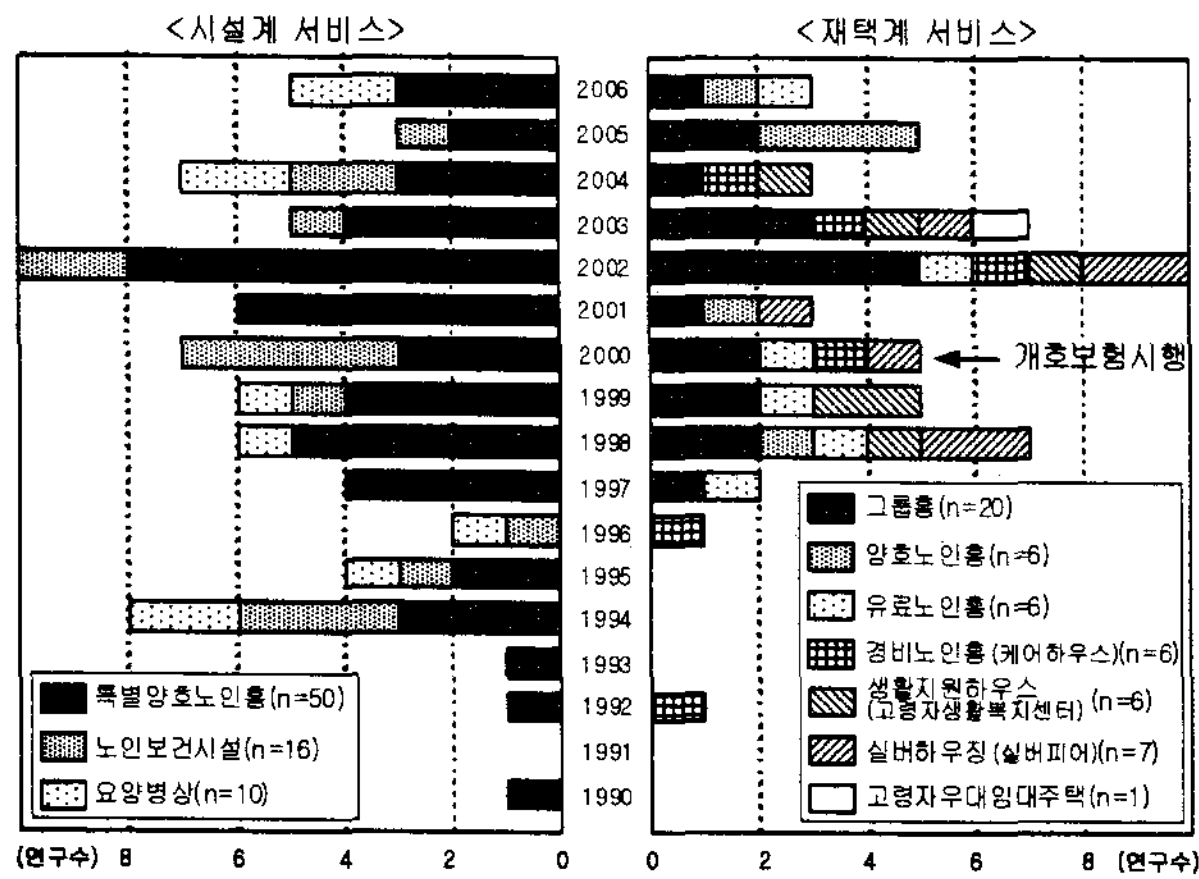


그림2. 노인거주시설 관련 논문 수 현황(n=108, 중복산정)

##### 2) 키워드별 연구 경향

특별양호노인홈과 그룹홈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요양시설 연구의 주된 키워드를 도출하면 표 1과 같다.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어떠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생활

전개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개실화, 소규모 공간, 공간구성, 타인(입소자나 직원)과의 대인관계, 환경이행, 개별성, 개호환경 등에 대한 키워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치매성 고령자그룹홈의 제도화와 함께 거주자의 거주환경으로서의 개념(개실, 소규모 등)을 다룬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호보험제도의 시설계획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 2. 일본 노인요양시설의 거주환경 특성

양호노인홈에서 분리되어 제도화되었던 특별양호노인홈은 효율적이고 획일적인 평면구성을 가지는 다인실과 대규모 식당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인을 위한 거주환경으로는 부적절하였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이후 “거주”라는 시점에서 거주환경을 개선하려는 선진적인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 1) 개실화(個室化)

먼저 개실화(個室化)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본 최초로 모든 실이 개실인 특별양호노인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거주자 자신이 가져온 개인물건의 수의 증가와 생활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프라이버시의 확보, 개인영역 재편성의 촉진 등 개실이 가지는 의미가 지적하였다(橋弘志, 1997). 또한 개실과 다인실의 영역형성의 차이를 파악하여 개실이 타인과의 인적교류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즉 다인실의 경우 동일 실 거주자와 자기 영역이 겹쳐져 항상 타인을 의식하게 되어 결국 자기 영역 내에 타인의 침입을 거절하게 되지만, 이에 반해 개실은 타인과 개인영역이 겹치지 않아 개인물건 등으로 자기영역을 형성하기 쉬워, 오히려 타인을 자기 방으로 초대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였다(井上由起子, 1997).

하지만 당시 종종 노인의 경우 개실은 인적 교류를 감소시키고 방에 칩거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표4. 키워드별 연구 경향 (총 논문편수 n= 69)

| 년도   | 논문편수 |     | 생활<br>전개 | 개실화 | 소규모<br>공간 | 공간<br>구성 | 지역<br>환경 | 대인<br>관계 | 환경<br>이행 | 자발성 | 영역<br>형성 | 개별성 | 프라이<br>버시 | 개호<br>내용 | 운영<br>방침 | 개별<br>케어 | 시지각 | 자세 | 기타 |
|------|------|-----|----------|-----|-----------|----------|----------|----------|----------|-----|----------|-----|-----------|----------|----------|----------|-----|----|----|
|      | 특양   | 그룹홈 |          |     |           |          |          |          |          |     |          |     |           |          |          |          |     |    |    |
| 1990 | 1    |     |          |     |           |          |          |          |          |     |          |     |           |          |          |          |     |    | 1  |
| 1991 |      |     |          |     |           |          |          |          |          |     |          |     |           |          |          |          |     |    |    |
| 1992 | 1    |     |          |     |           |          |          |          |          |     |          |     |           |          |          |          | 1   |    |    |
| 1993 | 1    |     |          |     |           |          |          |          |          |     |          |     |           |          |          |          | 1   |    |    |
| 1994 | 3    |     |          |     | 2         |          | 2        |          |          |     | 1        | 2   |           | 2        |          |          |     |    |    |
| 1995 | 2    |     |          |     | 1         |          |          |          |          |     |          |     |           | 1        |          |          |     |    | 2  |
| 1996 |      |     |          |     |           |          |          |          |          |     |          |     |           |          |          |          |     |    |    |
| 1997 | 4    | 1   | 3        | 2   | 2         | 4        |          | 3        | 1        | 2   | 3        | 1   | 2         |          |          |          | 1   | 1  |    |
| 1998 | 5    | 2   | 2        | 3   | 3         | 2        |          | 2        | 1        |     | 1        | 3   | 1         | 1        | 2        | 3        | 4   | 1  |    |
| 1999 | 4    | 2   | 5        | 4   | 4         | 3        | 1        | 3        | 4        | 3   | 4        | 4   | 1         | 1        | 1        | 2        | 1   | 2  |    |
| 2000 | 3    | 2   | 5        | 1   | 2         | 2        |          | 2        | 1        | 1   | 2        | 3   |           | 1        | 2        | 1        |     | 3  |    |
| 2001 | 6    | 1   | 6        | 2   | 2         | 5        |          | 6        | 3        | 1   | 1        | 3   |           | 2        | 2        | 1        |     | 1  | 2  |
| 2002 | 8    | 5   | 10       | 3   | 6         | 8        | 2        | 3        | 4        | 3   | 2        | 4   |           | 3        | 3        |          |     | 4  |    |
| 2003 | 4    | 3   | 5        | 1   | 4         | 6        | 1        | 2        | 1        | 2   | 1        | 4   |           | 1        | 3        | 2        |     | 1  |    |
| 2004 | 3    | 1   | 2        |     | 2         | 1        | 2        | 1        |          |     |          |     |           |          | 1        |          |     | 1  | 1  |
| 2005 | 2    | 2   | 3        |     | 2         | 2        | 1        | 2        |          |     | 1        | 3   |           | 1        | 2        | 1        |     | 1  |    |
| 2006 | 3    | 1   | 3        |     | 2         |          |          |          |          | 1   |          | 1   |           | 2        | 3        | 3        |     |    |    |
| 계    | 50   | 20  | 46       | 16  | 29        | 36       | 7        | 24       | 15       | 13  | 16       | 28  | 4         | 15       | 19       | 13       | 8   | 7  | 14 |

주) 기타 키워드 ; 외출행동, 피난행동, 주민참가, 타시설과의 연계 등



다인실의 회화와 자세를 관찰하여 인적 교류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인실 거주자의 2/3가 1일 대화수가 1회 미만이며, 60~90%가 동일 실 거주자와 등을 맞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제공되어진 구축환경에서는 적극적인 회화가 일어나기 힘들며, 심리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는 환경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石田妙, 2001).

이외에도 개실은 타인을 의식해서 의자나 테이블을 준비하거나 장식한다는 연구를 비롯하여, 가족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 2) 단계적 공간구성

거주자의 생활은 개실 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공간의 생활도 필요하게 된다. 공용공간 계획에 영향을 끼친 이론으로는 뉴만(O. Newman)의 집합주택의 방법에 관한 개념을 S. Howell이 노인시설에 적용시킨 단계구성 이론이다. 이는 각 공간을 조절하는 주체(거주자, 직원)에 의해 개인영역(private zone), 반개인영역(semi-private zone), 반공공영역(semi-public zone), 공공영역(public zone)의 4단계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개인영역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영역을 나누어 공간을 모래로 한 입소자와 타인과의 관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시설측의 프로그램 활동의 장인semi-public zone보다 입소자측이 컨트롤하기 쉬운 semi-private zone이 자신만의 장소 선택이 쉬우며, 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깊게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橋弘志, 1998, 1999, 2001, 2002).

표5. 시설 내 영역의 정의

| 영역구분  | 정의  | 주된 조절자    |
|-------|---|-----------|
| 개인영역  | 입소자 개인의 소유물을 가져와 관리하는 영역. 일반적으로 거주실이 포함                               | 입소자       |
| 반개인영역 | 개인영역의 외부를 복수의 입소자가 이용하는 영역. 거주실 앞 복도부분 등이 포함                          | 복수의 입소자   |
| 반공공영역 | 기본적으로는 식사나 재할, 레크레이션 등의 집단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 (프로그램간의 공백시간에는 자발적 행위도 행하여짐) | 직원 (개호직원) |
| 공공영역  | 거주자와 지역주민, 외부사회의 쌍방에 개방된 영역   | 직원, 지역주민  |

### 3) 유니트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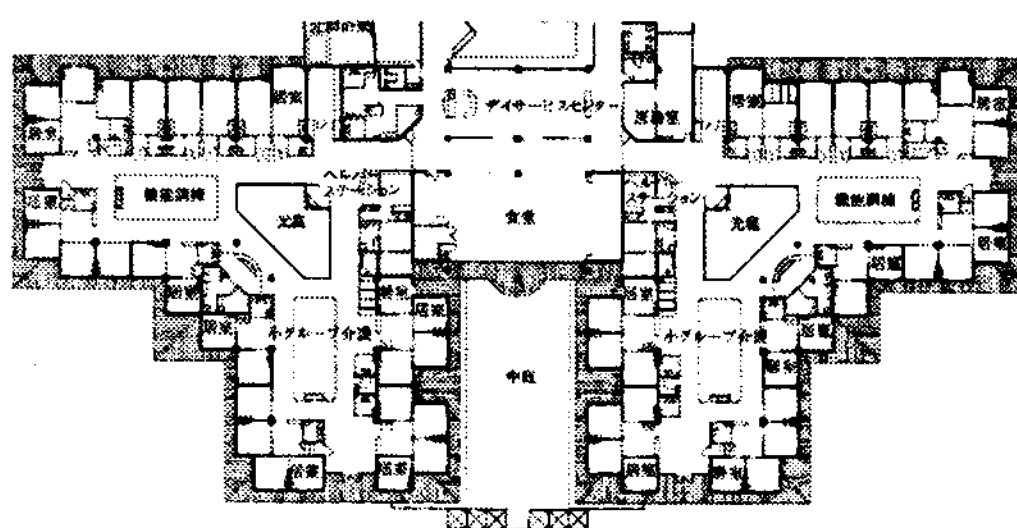
1980년대 중반 배회 등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당시 특별양호노인홈은 명확한 대책이 없이 치매노인을 입소시켜 왔었다. 1994년 골드플랜에 의해 그룹홈의 도입이 명기되었는데, 이 그룹홈은 ADL 및 치매레벨이 경도나 중등증인 노인을 대상으로 약 9개의 거주실과 공용공간(키친, 식사스페이스, 거실)로 구성된 물리적 환경을 가지며, 직원이 상시하는 시설이다. “친숙”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그룹홈이 가진 소규모적 공간과 개호는 입소자가 그룹홈에 적응해 가는 것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생활감각(가사일 등)을 되찾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였다(石井敏, 1997, 1999, 嚴爽, 1999, 2000). 또한, 노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직원의 개호방법이 중요하며, 그 케어를 지지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중정형 공간구성의 유효성을 지적하였다(鈴木健二, 2001, 2002). 이러한 그룹홈의 소규모 케어형태는 대규모시설에 비해 입소자와 직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능케 하며, 입소자는 직원의 극진한 지원을 받으면서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다.

이러한 그룹홈 연구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된 소규모 공간, 소규모 케어의 효과를 특별양호노인홈 등 대규모 시설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유니트케어이며, 2003년에는 소규모생활단위형 특별양호노인홈이 제도화되었다. 유니트케어란 대규모 시설의 공간을 간단히 구획하여 소규모 공간을 만들고, 그룹홈적인 케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생활단위의 소규모화와 개호단위의 소규모화가 기본으로 이들 개념이 연동할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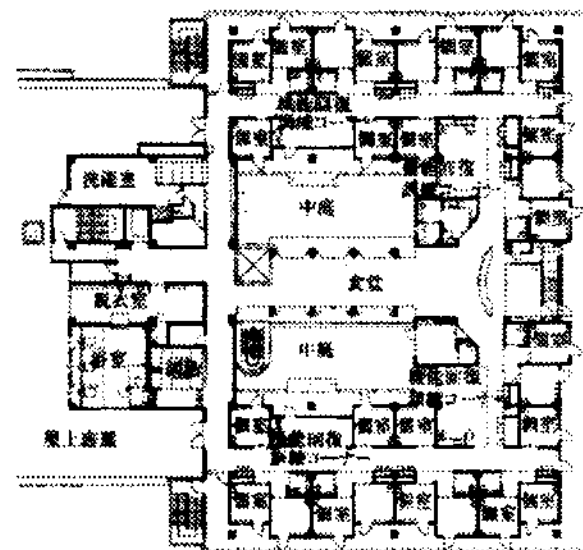
### 4) 생활단위와 개호단위의 소규모화

1997년 생활단위라는 개념을 노인시설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原健一郎, 1997). 생활단위란 건축공간에서 본 단위로 일반적으로 거주실, 공용공간(식당, 데이룸), 개호직원실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생활단위의 규모에 있어서는 거주자 측에서 본30인 이하를 소규모, 31~39인을 소규모와 중규모의 경계, 40~49인을 중규모, 50인 이상을 대규모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을 거주자와 가장 가까운 생활영역인 거주실과 인근 공용공간을 생활단위로 파악하였다(이하안, 2003). 이후 外山義는 치매성노인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룹의 규모를 생활단위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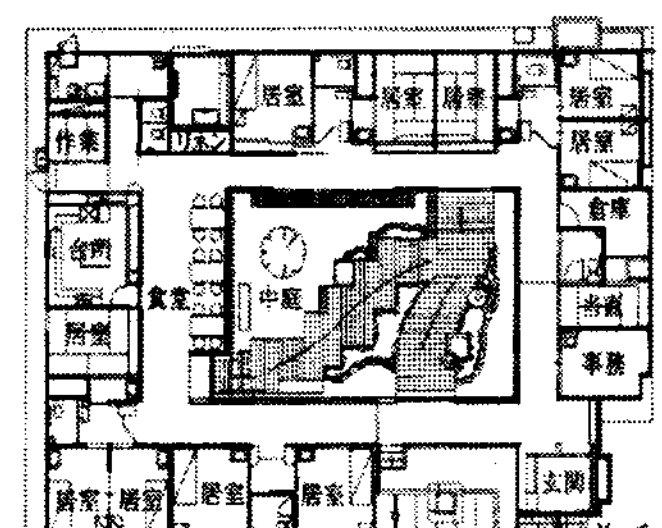
그림3. 주된 연구대상 시설의 공간구성 예



a. 특별양호노인홈 (개실+단계적 공간구성)



b. 특별양호노인홈 (유니트형)



c. 그룹홈

개호단위에는 2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개호를 담당하는 입소자 수나 공간의 범위를 말한다. 담당 범위는 담당 입소자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담당 입소자와 담당범위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개호직원의 근무체제 로테이션이 짊 수 있는 개호직원의 수이다. 전자의 개호단위에 대한 정의는 간호단위 등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노인시설에 도입시킨 것으로, 소규모 개호범위가 개호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였다(井上由起子, 1998). 또한 후자는 낮익은 얼굴의 직원이 매일 개호를 행함으로써 거주자의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룹홈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당범위와 근무체제의 소규모화가 일치하여 연동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노인요양시설의 연구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노인거주시설의 주된 연구대상은 특별양호노인홈과 그룹홈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이들 연구는 개호호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거주자와 직원 측면에서 거주환경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 왔고,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최근 일본 노인요양시설의 거주환경 특성을 개실화, 단계적 공간구성, 유니트케어, 생활단위과 개호단위의 소규모화로 정리하였다. 즉, 치매노인을 수용하는 시설 개념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생활이 존중되는 주거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마지막으로 2006년 4월 개호보험제도의 개정으로 지역밀착형, 소규모다기능형 등 새로운 서비스체계가 확립되었다. 즉, 시설내부완결형의 성격이 강한 시설계획에서 벗어나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의 방향성과 지역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橋弘志 외 3(1997. 10.), 개실형 특별양호노인홈에 있어서 개실내 개인적 영역형성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논문집.
2. 井上由起子 외 3(1997. 11.), 고령자거주자시설에 있어서 거주자의 개인영역형성에 관한 고찰 : 거주로서 특별양호노인홈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논문집.
3. 石田妙 외 2(2001. 1.), 공간의 사용방법과 회화특성에서 본 특별양호노인홈의 생활실태, 일본건축학회논문집.
4. O. Newman(1972),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Macmillan.
5. Sandra C. Howell(1980), *Designing for aging : Patterns of use*, MIT Press.
6. 橋弘志 외 3(1998. 10.), 특별양호노인홈 입소자가 시설공간에서 전개하는 생활행동의 장 : 개실형 특별양호노인홈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1, 일본건축학회논문집.
7. 橋弘志 외 2(1999. 9.), 특별양호노인홈 입소자의 개인적 영역형성과 시설공간구성 : 개실형 특별양호노인홈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2, 일본건축학회논문집.
8. 橋弘志(2001. 10.), 특별양호노인홈의 케어환경과 입소자의 생활전개 비교 : 개실형 특별양호노인홈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3, 일본건축학회논문집.
9. 橋弘志(2002. 7.), 특별양호노인홈 공용간에 있어서 세미프라이빗, 세미퍼블릭 영역의 재고찰 : 개실형 특별양호노인홈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4, 일본건축학회논문집.
10. 石井敏 외 2(1997. 12.), 그룹홈의 생활전개와 공간이용 특성 : 치매성노인의 환경구축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논문집.
11. 石井敏 외 4(1999. 10.), 선진사례에서 본 공용공간 구성과 생활의 관계 : 치매성노인을 위한 그룹홈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논문집.
12. 嚴爽 외 4(1999.9.), 그룹홈에 있어서 공간이용의 시계열변화에 관한 고찰 : 친숙(なじみ)에서 본 치매성노인의 케어환경에 관한 연구 1, 일본건축학회논문집.
13. 嚴爽 외 4(2000. 2.), 개호체제와 입소자의 생활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친숙(なじみ)에서 본 치매성노인의 케어환경에 관한 연구 2, 일본건축학회논문집.
14. 鈴木健二 외 2(2001. 8.), 치매성고령자그룹홈에 있어서 거주자의 생활 재편과정 : 치매성고령자의 케어환경에 관한 연구 1, 일본건축학회논문집.
15. 鈴木健二 외 2(2002. 2.), 치매성고령자그룹홈에 있어서 거주자 생활과 직원 케어의 상호관계 : 치매성고령자의 케어환경에 관한 연구 2, 일본건축학회논문집.
16. 原健一郎 외 7(1997), 건축형태별로 본 입소자의 생활단위 특징 : 특별양호노인홈에 있어서 치매성노인의 생활과 개호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 학술강연대회, pp.31-32.
17. 이하얀 외 1( 2003. 10.), 고령자거주시설에 있어서 생활단위의 일괄/분산과 공용공간의 체재행위에 관한 연구 - 서로 다른 공간구성을 가진 한일 고령자시설 6시설의 입소자 생활과 공간 사용방법, 일본건축학회논문집.
18. 外山義(2003. 7.), *自宅でない在宅(자택이 아닌 재택)*, 의학서원, pp.78-79.
19. 井上由起子の 3(1998. 6.), 고령자거주시설에 있어서 개실·유니트화의 의의 및 문제점 : 거주로서 특별양호노인홈의 본질에 대한 연구 2, 일본건축학회논문집.